

음악대학 발전위원회 내규

시행일 : 2017.9.1.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음악대학 자율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음악대학 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 위원은 학장, 각 학과장, 기악주임교수, 행정실장 등 당연직위원과 음악대학 전체 교수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는 선출직 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, 위원장은 행정실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④ 간사는 위원회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,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.

제3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선출직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음악대학 전체 교수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음악대학 발전계획 수립 및 점검
2. 음악대학 자율운영에 관한 사항
3. 음악대학 자율예산 예·결산 전반에 대한 심의
4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회의 소집)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위원의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전임교수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제6조(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록)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의의 비공개와 비밀유지) ①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회의참석 등 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보칙)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제1조 ① (시행일) 본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음악대학 운영위원회 내규 폐지) 본 내규 시행일로부터 음악대학 운영위원회 내규는 폐지한다.